

미국 학교도서관 전문직 자격제도와 배치기준

A Study on Certification Requirements and Personnel Standards for the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in the United States

권 은 경(Eun-Kyung Kwon)*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2. 자격 명칭 |
| II. 미국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 3. NBPTS |
| 1. 65% 해법 | V. 교육 프로그램 |
| 2.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성과 | VI.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규정 |
| III. 학교도서관 전문직 자격제도 | 1. ALA의 기본방침 |
| 1. 자격제도의 구성요소 | 2. 주별 규정 |
| 2. 자격제도의 성립과 변화 | 3. 지역별 규정 |
| IV.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자격요건 | VII. 맺는말 |
| 1. 주별 자격요건 | |

초 록

본 연구는 미국 학교도서관 전문직(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LMS) 자격제도의 구성과 발전, 자격요건, 명칭, 교육 프로그램, 배치규정 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SLMS의 자격요건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교사자격과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이다. 자격명칭 역시 주에 따라 다양하지만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Library Media Specialist가 가장 일반적이다. 자격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 교육청, 준비교육기관(대학), 전문직 단체가 있으며, 전국 교사교육 인가위원회인 NCATE가 ALA와 함께 교육프로그램 인가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SLMS의 배치는 주 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기관 인가단체에서 규정하는데 2002년 현재 19개 주가 규정을 갖고 있으며 늘어나는 추세이다. 6개의 지역 인가단체 중 3개 단체는 아주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고 있다. 분야별 수석교사 평가제도인 NBPTS와 최근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의 위상을 위협하는 '65% 해법'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주제어: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미디어 전문가, 자격제도, 자격요건, 사서교사 교육, NCATE, NBPTS, 배치규정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tate of the art of the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LMS)'s cer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content includes development of the SLMS certification, certification requirements, titles, preparatory education programs especially accredited by ALA and NCATE, personnel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states. The basic certification requirements are teacher certification and/or MLIS(MLS), but varying from state to state. Personnel standards are regulated by the Education Department of states, otherwise regional associations of colleges and schools. Nineteen states have the standards and three regional associations among six have very specified ones. The paper also analyzes NBPTS for Library Media and discussions on '65% Solution' which is an education reform movement affecting school library seriously.

Key Words: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Library Media Specialist, Certification Requirements, Education Program, Personnel Standards, NCATE, NBPTS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eunkwon@daegu.ac.kr)

• 접수일: 2006년 11월 24일 • 최초심사일: 2006년 12월 1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21일

I. 머리말

사서교사의 자격제도와 배치규정은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계 또는 더 나아가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학교도서관 전문직에 관련된 논란, 즉 학교도서관에 교사자격으로서의 사서교사를 배치할 것인가, 사서자격으로서의 학교사서가 더 적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자격과 능력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제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수요와 공급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공급 장치인 자격제도와 수요장치인 배치규정을 통해 학교도서관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인식을 고찰하였다. D.C.를 포함한 51개의 행정 자치체는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에 대해 매우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전문직의 발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학교도서관 전문가는 정보전문가이며 매체전문가의 특성을 가지지만 교사와 학생을 봉사 대상으로 하며 학교 환경 속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변화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학교도서관 전문가로서의 존재이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직으로서의 성과를 교육계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며 그것은 교육과정, 학업성취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최근 미국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일고 있는 65% 해법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미국의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자격제도, 자격요건, 교육제도, 배치규정, 그리고 최근 교육계의 변화 등을 고찰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사서교사가 교육환경에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미국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1. 65% 해법

최근 미국의 교육계는 First Class Education(FCE)이란 단체가 약 1년 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65% 해법(solution)의 입법화로 들끓고 있다. 이 운동의 목표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적어도 학교 운영경비의 65%를 교실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미국 학생의 학력저하 현상에 대한 우려가 게재되어 있다.

FCE가 인용한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NCES: 국립교육통계센터)의 통계

에 따르면 4년 전만 해도 미국의 7개 주가 학교운영경비의 65%를 교실에 투자하였고 14개 주는 60% 미만을 교실수업 투자하였는데 비해 지금은 20개 주가 60%도 교실수업에 투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유아 및 초·중·고의 교육기금은 물가상승률의 4배로 급격히 늘어났으나 교실에 대한 투자는 4년 연속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교실경비의 평균은 학교운영경비의 61.3%이다. FCE는 모든 주에서 교실경비를 65%까지 끌어올리도록 입법화하자는 운동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140억 달러를 교실에 투자하는 것이며, 이 금액은 모든 학생들에게 새 컴퓨터를 사주기에 충분한 액수이며, 초봉 4만 달러의 교사를 30만 명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FCE는 교실에 교육비를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은 교사 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표준화된 시험성적으로 50개 주를 순위화하면 상위 5개 주는 교실경비가 최상위로 평균 64.12%인데 비해, 성적 하위 5개 주는 교실수업 경비가 최하위로 평균 59.46%로 분석하고 있다.¹⁾ 그런데 교실경비를 65%로 끌어 올리는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교실외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다.

교실 중심의 교육개혁을 목표로 추진하는 65% 해법이 학교도서관과 매우 중요한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교실의 범위에 대한 정의 때문이다. 교실경비에 대해서 주 정부와 연방정부는 모두 NCES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데 NCES는 「교실 내 경비」와 「교실 밖 경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²⁾

- 「교실 내 경비」 : • 교사 및 교수 보조원의 급여와 혜택
- 교과서, 컴퓨터, 그리고 학교지급물품(school supplies)
 - 미술, 음악, 체육
 - 현장답사와 방과 후 프로그램
- 「교실 밖 경비」 : • 행정사무실과 행정가의 급여
- 차량운행
 - 교과과정 개발과 교사 연수
 - 간호사, 카운슬러, 그리고 사서의 급여
 - 급식 서비스

NCES가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는 교실 내/교실 밖이 아니라 instruction과 support services이다. 이 정의에는 학교도서관 사서는 교사가 아니라 교수지원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므로 65% 해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입법화 될 경우 학교도서관의 활동 및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위상은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Byrne, Patrick M. "Chairman's Corner." FCE 홈페이지
 <www.firstclasseducation.org/chairmanremarks.asp> [인용 2006. 10. 30]

2) FCE 홈페이지. [인용 2006. 10. 30]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4호)

그런데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신분이 교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은 것은 국가가 규정하는 여러 법에서 교사의 범위가 상호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02년부터 효력이 발효된 초·중등교육법 『No Child Left Behind』의 Title 1, Part B, Subpart 1, Section 1208에는 교원(Instructional staff)을 교장, 교사, 교수부장, 사서(librarians), 그리고 학교도서관 미디어전문가(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 교과교사로 정의하고 있다.³⁾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NBPTS: 전문교수기준 전국평의회) 역시 학교도서관 전문직을 전문직 교수수월성을 기준으로 교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교사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이 전국적인 교수기준 평가에 따라 수석교사로 인정받고 있다.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s(NCLIS) 역시 도서관 전문인력을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교사로 인정하고 있다.

NCES의 교사에 대한 규정이 NCLB, NBPTS, 그리고 NCLIS의 그것과 상호 배치되는 상황에서 ALA는 학교도서관 전문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 특히 읽기성적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ALA는 2006년 1월 22일에 열린 Midwinter 모임에서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가 가르치는 교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증거를 기초로 학교도서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사와 주의 입법관계자를 비롯하여 대통령, 교육관련 단체장들이 인식하도록 촉구하고, 학교도서관 미디어전문가가 교사에 포함될 수 있게 NCES의 교사분류를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성명을 결의하였다.⁴⁾

현재 65% 운동은 Louisiana, Kansas, Texas, Georgia 등에서 입법화, 또는 입법화가 추진 중에 있으며 선거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주도 있다. Minnesota 주의 경우에는 70%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 운동은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 쟁점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성과⁵⁾

콜로라도 주를 시작으로 1993년에서 2005년까지 미국의 17개 주에서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상당히 방대한 양적 질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14개 주에서 실시된 연구의 결과는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업성

3) U. S. Congress. 2001. *No Child Left Behind Act*.(P. L. 107-110)

4) "ALA Resolution on the Instructional Classification of School Librarians."

<www.schoollibraryjournal.com/article> [인용 2006. 9. 13]

5) 권은경. "미국학교도서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9), pp.381-414.

취도, 구체적으로는 표준화된 읽기 성적의 향상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출된 공통적인 결과는 첫째, 학교도서관과 성적의 관계는 일관되게 학교도서관은 성적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직원, 장서, 예산을 포함하는 학교도서관의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사서교사의 협력활동이 강화될수록, 정보기술의 사용이 학교도서관 소장 자료의 한계를 넘어 활성화될수록 학생들의 성적은 더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학교도서관은 학교 지역사회 변수 중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성적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확실한 요인이며, 잘 정비된 학교도서관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평균 10%~20%의 성적을 향상시킨다. 넷째, 학교도서관과 성적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교사-학생비율, 교사의 특성(경력, 급여), 학생의 특성(빈곤, 인종), 학생당 지출, 지역사회 인구 통계(빈곤, 성인의 교육정도 인종)에 의해 불식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학교도서관은 학업성취(성적)에 대한 공헌이 실증적으로 증명된 아주 소수의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 연구들 가운데 도서관 직원의 교육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예로 <표 1>에서 텍사스 주의 연구에서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 표준시험의 최저기준을 만족시키는 비율이 10%정도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초·중·고 전체를 통틀어 성적 우수학교의 비율에서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그렇지 못한 학교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사서교사 유무와 성적의 관계(텍사스)⁶⁾

구분	TAAS최저기준을 만족시키는 학생의 평균비율		90% 이상 학생이 TAAS최저기준을 만족시킨 학교의 비율	
	사서교사 배치	사서교사 미배치	사서교사 배치	사서교사 미배치
전체	89.3%	78.4%	52.0%	21.1%
초등학교	89.3%	79.2%	53.9%	20.3%
중학교	89.0%	79.2%	46.1%	21.6%
고등학교	89.8%	78.6%	52.7%	25.5%

* Smith, Easter, 2001. <표 V.1>, <표 V.2>를 이용하여 편집 작성

한편 <표 2>는 콜로라도 주에서 2000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경제적인 요인이 학교도서관 직원의 활동으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표 1>, <표 2>에서 학교도서관과 도서관 직원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분명하게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NCES의 규정에는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은 교수 보조인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6) Smith, Easter, 2001. *Texas School Libraries : Resources, Services, and Students' Performance*. Austin, TX: EGS Research & Consulting.

〈표 2〉 4학년 빈곤학생 비율과 도서관 직원요인이 읽기성적에 미치는 영향(콜로라도)⁷⁾

학교	급식학생비율(%)	도서관직원 총 근무시간(주)	읽기성적달성비율(%)
Ute Meadow 초등	1.1	40	63
Sierra 초등	5.3	60	73
Linton 초등	11.4	70	84
O'Dea 초등	29.9	75	87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Lance는 학생 당 도서관비용, 학생당 교수(instructional)비용이 각각 최고인 5개 주와 최하인 5개 주에 대해 학생들의 평균성적을 비교하였다.⁸⁾

〈표 3〉 도서관 및 교실 비용과 성적의 관계

시험	도서관			교수(교실수업)		
	최하위 5주 성적평균	최상위 5주 성적평균	차이	최하위 5주 성적평균	최상위 5주 성적평균	차이
NAEP 읽기/4학년*	25	34	36%	29	37	28%
NAEP 읽기/8학년*	23	35	52%	28	35	25%
SAT/고등학교**	1,069	1,130	6%	1,131	1,023	-10%

* 평균점 이상 학생의 비율

** 실성적

〈표 3〉은 도서관과 교실에 투자한 비용의 성적에 대한 효과를 직접 상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투자가 최하위인 5개 주와 최상위 5개 주의 평균 성적 달성비율의 차이와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최하위인 주와 최상위인 주의 평균 성적 달성비율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가를 각각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 대한 투자의 결과는 고등학교에서 6%, 8학년에서 52%의 성적 향상을 가져오는데 비해 교실에 대한 투자의 결과는 고등학교에서 -10%, 4학년에서 28%로,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성적에서 더 큰 차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고등학교의 SAT 성적은 교실에 더 많이 투자한 주에서 성적이 10%나 더 낮아지는 모순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현재 미국의 교육환경에서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도서관 전문직을 수업을 실시하는 교사로 구분하는가 아니면 교사 외 인력, 즉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보조적 인력으로 구분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효과가 교실수업만큼 가치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인정받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도서관 전문인력이 NCES의 구태한 분류에 의거하여 교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학교도서관과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위상은 상당한 위기에

7) Lance, K. C., Marcia J. Rodney, and C. Hamilton-Pennell, *How School Librarians Help Kids Achieve Standards: The Second Colorado Study*. San Jose, (CA: Hi Willow Research and Publishing, 2000), p.69.

8) Lance, Keith Curry. 2006. "The Outsiders".

〈www.schoollibraryjournal.com/article/CA6367042.html〉 [인용 2006. 8. 29]

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자격제도 전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학교도서관 전문직 자격제도

1. 자격제도의 구성요소

미국 학교도서관기준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 for Learning*는 학교도서관 미디어전문가의 역할을 교사, 교육동반자, 정보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자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교사, 교육동반자는 교육, 학교와 관련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자는 도서관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특성은 바로 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사서 또는 미디어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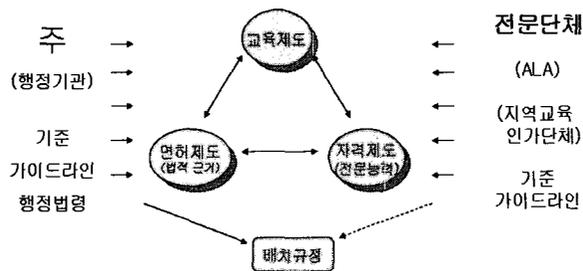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도서관 미디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 ALA 인가 대학의 학교도서관 미디어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또는 ALA/NCATE (National Council for the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가 공동으로 인가한 대학의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중에는 ALA나 NCATE같은 전문단체가 인가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주가 인가한 프로그램도 있고 반면에 전문단체나 주가 인가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도 있다. 주의 자격기준에는 대부분 전문단체인 ALA 또는 ALA/NCATE가 인가한 대학의 프로그램이나 주가 인가한 대학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초 자격증(initial certification)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 외에도 학부과정에서 부전공 또는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⁹⁾

일반적으로 전문직의 자격제도와 관련한 용어 및 개념으로 라이선스(license), 자격인정(endorsement), 그리고 자격증(certificat) 등이 있다. 이들 용어는 주제분야에서의 학업, 다양한 시험의 통과, 그리고 요구되는 능력의 구비 여부를 인정하는데 필요하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공중의 안녕 보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주에서 확립한 최저의 기준으로 법적 근거가 된다. 자격제도는 전문적 기준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점에서 면허제도와는 다르다. 주나 전문직에 따라서 자격제도와 면허제도의 기반은 동일하기도 하고 매우 다르기도 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문인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있는데 주의 자격요건에는 정해진 연구영역의 이수, 연구영역에 대한 능력,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식과 기술능력,

9) Hopkins, Dianne McAfee. "Issues in the Education of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
 <www.ala.org/ala/hrdbucket/1stcongressonpro/1stcongressissueeducation.htm> [인용 2006. 10. 5]

실무능력의 수준에 대한 판단 등이 반영되어 있다.¹⁰⁾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으로 교사자격과 도서관 전문지식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전문직의 교육, 지식, 실무 등에 있어서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자격제도에서 ALA와 같은 전문직 단체는 전문직의 임무와 그에 합당한 교육기준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위원회 같은 정책결정그룹은 전문교육의 평가기초가 되는 교육과정 이수에서 실무능력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다시 전문직 교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질, 면허, 자격인정, 자격증 발급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가 되며 따라서 전문가 단체, 교육기관 인가협회, 그리고 교육의 개혁의 방향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관계를 그려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구성요소

교육기관 인가제도는 전문직의 기준을 교육프로그램에 병합하는 장치로 전문직에서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ALA는 1987년 NCATE(전국 교사교육인가협의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1989년 NCATE는 학교도서관 매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가이드라인을 출간하였고 1992년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¹¹⁾

한편 미국의 6개 지역교육기관 인가협회는 학교교육의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향상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에 어떤 자격의 전문가가 몇 명이나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주 정부 역시 초·중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도서관 미디어전문가의 배치를 행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 미디어전문가의 자격제도는 타 전문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제도, 면허제도, 그리고 자격제도가 서로 조화와 견제를 통하여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한편으로는 주 정부와 같은 행정기관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또는 법령으로 보호·규제

10) Perritt, Patsy H. 1998. "The History of School Library Media State Certification." (In *The Emerging School Library Media Center*. Kathy Howard Latrobe ed.). Libraries Unlimited, INC. p.196.

11) NCATE 홈페이지 <www.ncate.org> [인용 2006. 8.29]

되며, 다른 한편으로 ALA, NCATE와 같은 전문단체는 학교도서관 전문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대학과 정책결정자가 전문직의 능력개발이나 전문직에의 진입을 위해 전문단체의 기준을 수용하도록 상호협력하고 있다.

2. 자격제도의 성립과 변화

학교도서관 전문직으로 교사의 자격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ALA에서 일찍부터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초에 ALA 학교도서관 부회는 학교도서관의 사서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조직이나 교육학 분야 같은 교사를 위한 교육적 배경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였으나 당시의 도서관 학교는 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학교사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만일 도서관 학교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육기관이 이 직책을 위한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¹²⁾

1934년 ALA와 미국사범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Colleges: AATC)는 교사, 교사-사서, 학교사서, 학교경영자를 위해 설계된 도서관교육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하고, 교육 및 도서관 그룹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향후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동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위원회는 1936년 보고서를 간행하였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A Proposed Library Science Curriculum for Teachers and Teacher-Librarians」는 교육프로그램의 틀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주에서 자격제도를 개발하는 틀을 제공하였다. 1930년대에서 1940년대에 걸쳐 학교사서를 위한 자격제도를 요구하는 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36년에 D.C.와 17개 주가 학교사서에게 자격증을 요구하였으며, 1945년에는 D.C.와 31개 주가 학교사서에 대해 전문자격을 요구하였다.¹³⁾

1958년 미국 교육부는 학교사서에 대한 주의 자격요건을 조사 출판하였는데 자격요건은 사서인 동시에 교사로 확립되어 있었다. 1958년에 하와이를 포함한 48개 주가 학교사서의 기본 자격으로 교사자격을 요구하였다. 그 중 23개 주가 교사자격 조건을 기본으로 학교사서 전문자격증을 발급하였고 25개 주는 전문 주제로 문헌정보학을 인정하는 교사자격을 발급하였다. 네바다 주와 D.C.만 교사자격과 관계없이 학교사서자격증을 발급하였다. 교사교육에 기초한 자격증을 채용한 주는 거의 대부분 최저자격으로 학사학위와 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0-30시간(학기제)의 교직과 4-36시간의 문헌정보학을 요구하였는데 주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1970년대 초까지는 학교도서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 전공 시간은 6시간으로 이는 단기 또는 시간제로 전문직에 진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었으며 주에 따라 18시간, 24시간 또는 6년 차 전문과정, 학사과정 이상에서의 60

12) Horton, M., "Preparation for School Librarianship," *The Library Journal*, Vol.47(1922), pp.461-462.(Perritt, Patsy H. 1998.에서 재인용)

13) Perritt, Patsy H. 1998. p.198.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0개주와 D.C.는 평생 자격 취득요건으로 석사학위를 요구하였다.¹⁴⁾

1960년대에 들어서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AASL/ALA는 DAVI(Department Audiovisual Instruction)/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71년 이후 현재의 AECT)와 함께 1969년에 *Standards for School Media Programs*를 간행하고 미디어 전문가, 미디어 센터, 미디어 프로그램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용어의 혼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격제도를 학교사서와 시청각 전문가로 이분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교사서, 시청각 전문가, 그리고 교수매체 전문가 등의 용어가 혼용되면서 이들 조직은 조화와 분리가 함께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¹⁵⁾

이상의 과정에서 보면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을 중심으로 하지만 점차 도서관 및 매체 관련 전문직이 강화되었으며, 교육매체의 다원화로 도서관 관련 자격과 함께 A/V 및 교육·교수매체 관련 전문 자격이 함께 공존하였다. 그러나 교육매체의 지속적인 변화, 교과목의 변화, 역할의 변화 등으로 현재는 전통적인 학교사서라는 명칭과 더불어 A/V 전문가라는 명칭역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¹⁶⁾

IV.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자격요건

1. 주별 자격요건

미국의 공공도서관 사서자격은 ALA 인가학교의 석사학위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은 주의 교육청이 정한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자격요건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교사자격증, 문헌정보학 또는 교육학 분야의 석사학위, 수업경력, 추가 과정/학점 이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3년 미국의 50개 주와 D.C.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자격요건(2003년 조사)¹⁷⁾

구분	교사자격	석사학위(문헌정보학/교육학)	수업경력	학교도서관실습
주	36	20	9	37

14) Perritt, Patsy H. 1998. p.201.

15) Perritt, Patsy H. 1998. p.202-3.

16) Morris Betty J. 2004.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4th ed. Libraries Unlimited.

17) Thomas, Margie J. and Perritt, Patsy H. 2003. "A Higher Standard".

www.schoollibraryjournal.com/article/CA3395625.html [인용 2006. 8. 29]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에 대해 50개 주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학사학위이며 다른 하나는 문헌정보/교육매체 분야의 학점 이수(15~36학점) 또는 문헌정보/교육매체 분야에서 ALA 또는 ALA/NCATE 가 인가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대로 2003년에는 교사자격을 요구하는 주가 36개,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주가 20개이다. 교사자격과 석사학위를 동시에 요구하는 주는 14개로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알칸사, 하와이, 아이오와, 캔사스, 켄터키, 메사추세츠, 미시시피, 네바다, 뉴저지, 텍사스, 위스콘신 등이다.

인디애나, 플로리다와 같은 주는 지원자들에게 ALA 인가학교의 석사학위를 기본으로 교사자격을 요구하는데 교육대학에서 6-18학점을 이수하여 취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위스콘신, 사우스다코타를 비롯한 27개 주는 교사자격을 기본으로 문헌정보/교수매체 관련과목 20학점을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자격이 한결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5>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자격요건(2006년 조사)¹⁸⁾

구분	교사자격	석사학위	수업경험	실습	시험
주	21	14	필수 7(선호 4)	33 (3-200시간)	29 (Praxis I: 2, Praxis II*: 15, 자체시험: 6, 기타: 4)

* Praxis 시험은 비영리기관 ETS가 주관하며 미국의 주가 교사자격증 발급을 위한 과정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Praxis I은 학문의 기본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이며, Praxis II는 전반적 및 주제 전문지식과 교수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이다.

2006년도 조사에서는 42개 주가 도서관 전문인력에 대해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자격은 2003년과 유사하다.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가장 쉬운 아이다호, 켄터키를 포함한 8개 주는 교사자격증과 함께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학교도서관 미디어 분야의 학점을 16~21학점 이수하는 것이다. 37개 주는 문헌정보학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18~36학점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4>와 <표 5>를 비교해보면 2003년과 2006년의 자격요건에 대한 차이는 확연하다. 교사자격을 요구하는 주가 36개 주에서 21개 주로 줄었으며,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주 역시 20개 주에서 14개 주로 줄었다. 2003년에 교사자격과 석사학위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 주가 14개였는데 반해 2006년에는 앨라배마, 알칸사, 그리고 캔사스 세 곳으로 줄었다. 이 세 주는 두 가지 자격 외에 시험도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 11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와 미시시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취소하였고, 애리조나, 켄터키, 네바다, 그리고 위스콘신은 교사자격만, 하와이와 텍사스는 석사학위만 요구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복합적인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앨라배마의 경우 알칸사와 함께 조사내용인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8) Thomas, Margie J., "State of the Nation," *School Library Journal*, Vol.52, No.6(2006), pp.56-62.
 <www.schoollibraryjournal.com/article/CA6339501.html> [인용 2006. 8. 29]

살펴보면 교사자격증, 교수경험 2년, 주에서 인정한 대학의 전문분야 과정 이수, 주 교육청이 정한 종합시험이 포함된다.¹⁹⁾ 실습은 대학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시험만으로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이 될 수도 있다. 시험을 요구하는 29개 주 가운데 조사내용에 포함된 다섯 가지 요건 가운데 시험을 제외한 네 가지 - 교사자격, 석사학위, 수업경험, 실습-중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은 주는 세 곳이며, 10개 주에서는 시험과 교사경험, 시험과 실습만을 요구하고 있다.

뉴햄프셔와 와이오밍은 적어도 조사내용에 포함된 다섯 가지 요건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격요건이 완화된 배경에는 교사자격과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점, 학교도서관 전문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능력 중심의 평가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및 학점이수를 ALA, ALA/NCATE, 또는 주가 인정한 대학에서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5개 주에는 교육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질 높은 자격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자격 명칭

자격의 명칭은 자격제도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격제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미국의 자격제도는 주 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명칭도 주에 따라 상이하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학교사서(school librarian), 사서교사(teacher librarian)와 같은 명칭은 이전에 비해 점점 사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서교사라는 명칭은 1970년대 초까지는 일반교사로서 시간제로 도서관 업무를 맡은 교사를 의미하였으나 이후 점차 문헌정보학 학점을 이수한 교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²⁰⁾ 자격 명칭은 1984년의 조사에서는 23개, 1996년 조사에서는 20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¹⁾ 2000년의 조사²²⁾를 보면 Audiovisual Services(인디애나), Instructional Technology Specialist(펜실베이니아)와 같은 명칭은 드물게 사용되고 있으며, Librarian, School Librarian과 같은 고전적 명칭도 아직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통용되는 명칭은 Library Media Specialist와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이고 이 외에도 School Media Librarian, Library Media, Media Librarian, Media Specialist, Media Generalist, Media Professional, Education Media Specialist, Education Media Generalist, Library Media

19) "School Library Media Certification: State of Alabama."
<www.slis.ua.edu/school-media.html> [인용 2006. 9. 7]

20) Franklin, A., "School Library Certification Requirements," *School Library Journal*, Vol.20(1973), p.19. (Perritt, Patsy H. 1998. p.201에서 재인용)

21) Perritt, Patsy H. 1998. p.203.

22) Perritt, Patsy H. 2000. "Getting Certified in 50 States."
<www.schoollibraryjournal.com/article/CA153043.html> [인용 2006. 9. 20]

Teacher, Library Information Specialist, Learning Resources Specialist 등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매우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미디어 전문가이지만 media specialist는 교육학이나 매체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자격자를 의미하며, media professional은 자격유무를 떠나서 교육공학 또는 정보학 분야에서 교육을 이수하든지 교과과정과 교육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²³⁾

이렇게 자격증 명칭이 다양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1969년 70년대에 도서관 영역과 교육매체 영역이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된 것에도 기인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교원제도 및 자격제도가 무척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교사자격 규정은 역시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시교사(임시면허를 주어 학교에 근무하면서 2~3년 내에 학점을 이수하여 자격을 획득) 자격, 초임교사 자격, 표준 자격(매 5년 마다 평가), 전국 자격(수석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격 수준에 따라 자격 명칭이 다르다. 또 교사가 지도하는 대상 학년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른 명칭의 자격증이 발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물론 전문인력으로서의 교육 배경과 주에서 사용하는 명칭 역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미국의 학교도서관 전문직 자격 및 명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다.

〈표 6〉 자격 수준 및 자격 명칭의 기준

교육분야 및 그 수준	교사, 도서관전문직, 자격인정
담당학년에 따른 자격	PreK-12, 초등/중등, 초/중/고
전문직 근무 경력	신임, 경력, 전국자격(NBPTS)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주 내에서 동일 전문직에 대해 몇 개의 다른 자격증이 발부되는 예를 살펴보면 〈표 7〉, 〈표 8〉과 같다.

〈표 7〉 코네티컷 주(7/1/89): 경력에 따른 예²⁴⁾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Initial Educator(PreK-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 교사자격증: 10개월 수업경력: SLMS인가 프로그램 랩의 대학원에서 24시간 이수; Praxis I(2개의 다른 구비요건을 포함하여 3개 중 하나 만족시)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Provisional Educator(PreK-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ST 평가 완료 및 initial certificate를 보유한 후 10개월 수업 또는 • 인가학교에서 SLMS로 30개월 수업경력 등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Professional Educator(PreK-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 provisional educator로 30개월간 수업 경력 또는 • SLM에서 6th-year 프로그램 이수

* CT: Certified Teacher

23) ALA & AECT, *Media Programs: District and School* (Chicago: ALA and Washington D.C.: AECT, 1975), pp.22-23.

24) Perritt, Patsy H. 2000.

〈표 8〉 켄터키 주(1/1/98) : 대상 학년에 따른 예²⁵⁾

School Media Librarian(K-12)	최소 30시간 school media librarian 전문과정 이수; 150시간 현장경험과 최소 12주의 실습지도 이수; Praxis II
Endorsement of Teaching Certificates for School Media Librarian-Elementary(K-8)	school media librarian 전문과정 24시간 이수; 초등학교에서 3주간 실습지도 이수
Endorsement of Middle School or Secondary Teaching Certificates for School Media Librarian(5-12)	school media librarian 전문과정 24시간 이수; 중등학교에서 3주간 실습지도 이수 등
Endorsement of Librarian Certificates for all 12 Gra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자격증은 초등학교의 교육프로 그램의 계획과 운영(3시간) 이수로 자격 인정; 3주간 실습지도 이수 • 초등학교 자격증은 중등학교의 교육프로 그램의 계획과 운영(3시간) 이수로 자격 인정; 3주간 실습지도 이수
School Media Librarian- One-Year Approval(Recruitment Plan)	학기 초 4주간 내의 1 주간 SLM 프로그램의 운영과 조직 능력을 보이도록 설계된 실습; 9시간 학점 이수 등

3.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²⁶⁾: 전국자격기준

NBPTS는 1987년에 비영리, 초당파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설립 배경에는 1983년에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이 미국의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보고서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과 이에 대해 3년 후인 1986년에 교육개혁의 방안을 제시한 교사직에 관한 카네기 연구팀(Carnegie Task Force on Teaching as a Profession)의 *A Nation Prepared: Teachers for 21st Century* 라는 보고서가 있다. *Nation at Risk*는 미국의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경종을 울린 시금석적 보고서이며 *A Nation Prepared*는 *Nation at Risk*의 틀 안에서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보고서이다. *A Nation Prepared*는 미국 교육의 문제는 교사에게 있는데 우수한 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하였다. 즉 학교교육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가 없고 따라서 우수교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높은 자질을 갖춘 교사가 학교에 남아 있지 않는다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A Nation Prepared*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 및 주 회원으로 구성된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를 설립하여 교사가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수준 높은 기준을 확립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교사에게 합당한 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로 설립된 기관이 바로 NBPTS이다.

NBPTS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통해서 사명을 구현한다. 첫째, 유능한 교사가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높고 엄격한 기준을 유지한다. 둘째,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교사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전국 차원의 자발적 평가 시스템을 제공한다. 셋째, 미국 교육제도에 전국자격제도를 통합하고 전국자격교사(National Board Certifies Teacher)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교

25) Perritt, Patsy H. 2000.

26) NBPTS 홈페이지 <www.nbpts.org> [인용 2006. 11. 7]

육개혁활동을 추진한다. Library Media 분야는 2001년부터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 현재 14개 분야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

Library Media분야의 10가지 영역별 평가 항목은 <표 9>와 같다.

<표 9> NBPTS 도서관 미디어 기준: 평가영역

도서관 미디어 전문가가 알아야 할 것	
I.	학습자에 관한 지식
II.	교수 학습에 관한 지식
III.	문헌정보학에 관한 지식
도서관 미디어 전문가가 해야 할 것	
IV.	통합교육(Integrating Instruction)
V.	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한 혁신 주도
VI.	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미디어 전문가의 전문적 성장	
VII.	세심한 실천
VIII.	전문가로서의 성장
IX.	윤리, 평등, 다양성
X.	지도력, 후원, 커뮤니티 파트너십

전국 자격교사로서 평가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사학위와 3년 이상의 교수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전국 자격교사 후보자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두 가지로 하나는 수행능력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평가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가센터에서 보는 시험이다. 각 평가 방법에 따른 구성요소와 점수는 <표 10>과 같다.

<표 10> NBPTS 도서관 미디어 기준: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배점
1. 협력수업(Instructional Collaboration)	16
2. 문학 감상능력 배양	16
3. 교수공학의 통합	16
4. 수행결과보고서: 학생의 학습에 대한 기여도	12
평가센터	
조직운영	6.67
윤리적 및 법적 원칙	6.67
기술	6.67
장서개발	6.67
정보활용능력	6.67
문학이해	6.67
합 계	100.02

2004년 11월 현재 미국의 전국자격교사의 수는 40,209명이며, 도서관 미디어 분야의 전체 수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노스캐롤라이나 278명, 플로리다 200명, 사우스캐롤라이나 131명 등 전국적으로 약 8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²⁷⁾

V. 교육 프로그램

학교도서관 전문직에 입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사자격의 취득과 함께 ALA/AASL에서 인가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NCATE가 인가한 사범/교육대학에서 학교도서관 미디어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2006-2007년도에 ALA가 인가한 문헌정보학 대학원 과정은 미국 내에만 31개 주 48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²⁸⁾ 이 중 두 대학(UCLA, North Carolina Central University)에는 학교도서관 미디어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46개 대학에는 모두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ALA/NCATE가 공동 인가한 대학은 2006년 현재 22개 주 35개 대학이 있다.²⁹⁾ NCATE가 인가한 35개 대학의 프로그램을 단과 대학별로 살펴보면 그 가운데 18개 대학이 교육학 분야에, 12개 대학이 문헌정보학 분야에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학위별로 분류해보면 교육학 석사(M. Ed.)가 16개 대학, 문헌정보학 석사(MLIS/MLS)가 10개 대학, M.S.가 7개, M.A.가 1개, 자격과정 1개 대학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M.S.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의 학위 명칭은 M.S. in School Library Media라는 평범한 것에서부터 M.S. in Teaching, Learning, and Leadership(Oklahoma State University), M.S. in Applied Communication, Library Media(Fitchburg State College)와 같이 특이한 것도 있다.

48개의 ALA/AASL 인가대학과 35개의 NCATE 인가대학 중 서로 중복되는 학교는 8개 대학이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ALA/AASL 인가대학 46개 중 38개 대학의 프로그램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적 인가단체인 NCATE의 인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기본 자격으로 교사를 요구하는 수가 많고 또 65% 해법과 같은 교육개혁 운동과의 관련에서 ALA/AASL 인가대학으로 NCATE의 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27) Dickinson, Gail. 2006. *Achieving National Board Certification for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 ALA. (p.25의 숫자를 토대로 필자가 추산하였음)

28) ALA. 2007. *Library & Information Studies : Directory of Institutions Offering Accredited Master's Programs 2006-2007*(이 자료에는 미국 내에 푸에르토리코의 대학을 포함하고 있어서 31개 주 49개 학교가 리스트 되어 있다).

29) "Nationally Recognized Programs", NCATE 홈 페이지
<www.ncate.org/public/recogPgmSPA.asp> [인용 2006.10. 5](NCATE 홈 페이지에는 22개 주 35개 대학이 리스트되어 있으나 ALA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리스트에는 23개주 38개 대학이 있다.)

ALA/AASL 인가대학과 NCATE 인가대학 외에도 주에서 인가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광대한 지역에 캠퍼스 프로그램을 갖지 못한 주에서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VI.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규정

1. ALA의 기본방침

미국 학교도서관기준인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 for Learning*은 도서관 매체전문가의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Information Power*는 도서관 매체센터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목표로 달성해야 할 정보활용능력의 기준과 함께 학습을 위한 도서관 매체 전문가의 역할을 교사, 교육적 동반자, 정보전문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자로 정의하고 있다.³⁰⁾ 기준 내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학교도서관 매체센터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가 최소한 자격을 갖춘 한명의 전임 전문가를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³¹⁾

2. 주별 규정

2002년 조사³²⁾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주는 19개이다. 1998년 조사³³⁾의 17개 주와 비교해보면 <표 11>과 같다.

1998년의 조사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887명이었으며, 2000년에는 953명,³⁴⁾ 2002년도에는 856명으로 줄어들어서 이전에 비해 사정이 다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verhart가 2002년도에 사용한 조사방법은 기본적으로 주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책임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담당직책이 없어진 경우도 많이 있어서, 주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사무직원, 주 AASL지부 사무직원, 또는 주의 문헌정보학 대학원 관련 교수 등을 통하여 조사 보완하였으며 응답은 최소한 주의 관계자로부터 조사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Everhart에 따르면 2000년의 수치 중에서

30) AASL & AECT,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 for Learning* (Chicago: ALA, 1998), pp.4-5.

31) Hopkins, Dianne McAfee. I2006.

32) Everhat, Nancy. 2002. "Filling the Void."

<www.schoollibraryjournal.com/article/CA218584.html> [인용 2006. 11. 4]

33) Everhat, Nancy. 1998. "The Prognosis, Doctor?"

<www.schoollibraryjournal.com/article/CA152998.html> [인용 2006. 11. 4]

34) Everhat, Nancy. 2000. "School Staffing Survey 2000 Looking for a Few Good Librarians."

<www.schoollibraryjournal.com/article/CA153050.html> [인용 2006. 10.3]

23개는 1998년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고³⁵⁾ 2002년도 수치 중 19개는 2000년도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조사의 수치는 미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기보다 하나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주별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규정

주	1998			2002				비고
	초	중	고	초	중	고	학생수	
D.C.	전체	전체	전체	--	--	--	955	2003 고등
하와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670	
캔사스	전체	전체	전체	--	--	--	458	
위스콘신	--	전체	전체	LMS감독관	전체	전체	661	
일리노이	--	--	전체	--	--	전체	1,052	
메릴랜드	200	200	200	200	200	200	863	
로드아일랜드	250	250	500	--	--	전체	522	
조지아	251	251	251	251	251	251	733	
몬태나	251	251	251	251	251	251	466	
알칸사	300	300	300	300	300	300	437	1500이상 2명
버몬트	300	300	300	300	300	300	455	
버지니아	300	300	300	300	300	300	782	
S. 캐롤라이나	375	400	400	375	400	400	576	
뉴욕	--	500	500	--	전체	전체	860	
오클라호마	--	--	500	--	--	500	636	
네브라스카	750	750	750	750	750	750	511	
미주리	800	800	800	800	800	800	559	
미시시피				500	500	500	689	
테네시				550	550	300	645	SACS
켄터키				2교 이상에 1명			521	
오레건				학군에 1명			451	

1998년에 배치규정을 갖고 있던 17개 주 가운데 11주는 2002년에도 그대로이며 1998년보다 규정이 진보한 곳이 2주, 후퇴한 곳이 3주, 그리고 4주에서는 새로 규정이 확립되었다. 2002년도 조사에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사정이 가장 좋아서 직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낮은 주는 노스다코타로 312명인데 배치규정은 없다. 2위는 알칸사와 앨라배마로 437명이다. 알칸사스는 2000년에 439명으로 1위였다. 2002년도에 배치규정을 가지고 있는 19개 주의 전문직 1인당 평균학생 수는 636명이다. 이 숫자는 모든 학교에 전문직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주도 있고 그 외에도 배치기준 학생수가 200명대가 3개 주, 300명대가 3개 주, 500명대가 2개 주인 것을 감안하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않다.

35) Everhat, Nancy. 2000.

Everhart의 1998년, 2002년도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기준을 마련한 몇 개 주의 예는 다음과 같다.

텍사스 주는 직원 배치기준을 학생수에 따라 4구분한 다음 도서관 프로그램 수준을 모범, 인정, 수용, 기준미달의 네 등급으로 나누고, 직원을 전문직과 준전문직으로 나누어 각 범주에 필요한 인원을 구분하였다. 전문직의 배치만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텍사스 주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규정³⁶⁾

학생수	모범수준	인정수준	수용수준	기준미달
0-500	1.5 CL* 이상	1 CL 이상	1 CL 이상	1 CL 이하
501-1,000	2 CL 이상	1.5 CL 이상	1 CL 이상	1 CL 이하
1,001-2,000	3 CL 이상	2 CL 이상	1 CL 이상	1 CL 이하
2,001 이상	3 CL + 700명 당 1명 사서 추가	2CL + 1,000명 당 1명 사서 추가	2 CL 이상	2 CL 이하

* CL : Certified Librarian

캘리포니아 주의 규정 역시 기본적으로 학생수와 도서관 프로그램의 수준에 따른 인력 배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나누어 적용시키고 있다. 가장 복잡한 고등학교를 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캘리포니아 주 고등학교 도서관전문직 배치규정³⁷⁾

학생수	모범수준	노력수준	위협수준
1,000 이하	1 도서관 미디어 교사 1 기술자 1 사무원	1 도서관 미디어 교사 1 기술자 1/2 사무원	1 도서관 미디어 교사 1/2 기술자 0 사무원
1,001-2,500	2 도서관 미디어 교사 1 기술자 1 사무원	1 1/2 도서관미디어 교사 1 기술자 1/2 사무원	1 도서관 미디어 교사 1 기술자 1/2 사무원
2,500 이상	2+ 도서관 미디어 교사 2 기술자 1 사무원	1 1/2 도서관 미디어 교사 1 1/2 기술자 1 사무원	1 도서관 미디어 교사 1 기술자 1 사무원

메사추세츠 주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구분 없이 500명당 한명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³⁸⁾ 알칸사 주는 학생수 300명 이하의 학교에서는 0.5명, 300명 이상은 1명, 1,500

36) *Texas Administrative Code*. <www.tsl.state.tx.us/ld/schoollibs/slsAdopted2005.pdf> [인용 2006. 11. 8]

37)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Strong School Libraries*. 2004. California School Library Association STANDARS TASK FORCE.

38) *Massachusetts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Standards for 21st Century Learning*. 2003. Massachusetts School Library Media Association.

명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의 도서관미디어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⁹⁾ 그리고 앨라배마 주의 경우에는 지역교육기관 인가협의체인 SACS의 기준에 위임하고 있다.⁴⁰⁾

미국에서는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모든 기준이 주에 따라 다르며, 주의 학교도서관 미디어 협회와 주 도서관(State Library)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 주 도서관 역시 주 정부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주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독립 기관으로 존재하는 등 주에 따라 그 위상은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주의 배치기준 역시 기준에 참여한 기관의 행정적 위상에 따라 법적 또는 행정적 구속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텍사스 주의 경우 기준은 주의 행정법령(Administrative Code)으로 정해져 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 주와 메사추세츠 주의 경우에는 전문직 단체의 권고기준의 역할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이 적은 것은 주의 강력한 배치규정 실시 여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인구통계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중의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MLS/MLIS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것도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의 배치규정이 없는 경우에 학군에 따라서는 도서관 인력을 감소시키는 예도 있고 절약한 비용으로 도서관 직원 외에 교원을 채용하기도 한다. 전문직원이 부족할 경우 도서관 전문인력이 되기를 희망하는 교사를 배치한 후 3년간 1년에 6학점씩 전문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3. 지역별 규정

미국에서 교육분야의 인가제도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질적인 검증을 위해 대학과 중등학교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발된 방법이다. 인가제도의 목적은 교육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증명하고 개선하는 것이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분명한 사명과 목표, 책임감 있는 리더십, 엄격한 교과과정, 수행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고와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지원, 관계자들과의 평가 및 전달 등에서 높은 기준을 만족시켜야하며 둘째,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셋째,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질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⁴¹⁾ 미국에는

39) *Arkansas Department of Education Standards*
<arkedu.state.ar.us/stadrads/-stadrads.html> [인용 2006. 9. 5]

40) Alabama Department of Education, State Board of Education, Reach Educational Adequacy.
<www.alsde.edu/html/adequacy.asp> [인용 2006. 9. 7]

41) *Accreditation Standards for Quality Schools: For use by schools seeking NCA CASI or SACS CASI accreditation, 2006.* NCA CASI, SACS CASI, and NSSE(NCA CASI: North Central Associ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 and School Improvement; SACS CASI: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Commission on Accreditation and School Improvement; NSSE: National Study of School Evaluation).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지역 교육기관 인가협의체가 6개 있다.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SACS), Middle State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MSACS), New England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NEACS),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NCACs), Northwest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NACS), West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WASC)이 그것이다.

이들 협의체는 그 지역의 학교기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인가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준에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협의체에 따라 기준은 매우 다양한데, WASC(캘리포니아, 하와이)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언급이 없다.

MSACS(뉴저지, 뉴욕, D.C. 등 6주)의 인가기준에는 Learning Media Services and Technology에서 직원은 학생들과 직원에 대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해야 한다고 만 규정하고 정확한 인력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⁴²⁾

NEASC(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6주)는 학교도서관의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인력에 관해서는 자격있는 도서관/미디어 스페셜리스트에게 훈련받고 지도받은 능력을 갖춘 직원(qualified personnel)을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³⁾

NACS(알래스카, 아이다호 등 7주)는 인가를 위한 핵심기준의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항목에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배치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하고 있다.

- 학생 수 250명 이하인 경우 도서관 직원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는 않으나 자격을 가진 도서관미디어 전문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학생 수 250-500명의 경우는 한 명의 도서관미디어 전문가를 둔다.
-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의 전문가와 추가 도서관 미디어 직원을 둔다.
- 자격이 없는 직원은 자격을 가진 도서관미디어 전문가의 감독을 받는다.⁴⁴⁾

SACS(앨라배마, 플로리다, 텍사스 등 11주)의 2005년도 인가기준⁴⁵⁾은 <표 14>와 같다.

<표 14> SACS의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규정

구분	1-249	250-499	500-749	750-999	1000-1249	1250-1499	1500이상
L/M 스페셜리스트	.5	1	1	1	2(중등) 1(초·중)	2(중등) 1(초·중)	1500 이상 매 250인에 1명 추가
보조원	1 .5(초)	2.5 1(초)	4 1.5(초)	4.5 2.5(초)	5 3(초)	5.5 3(초)	6 3(초)

42) "MSA Standards for Accreditation."

<www.ces-msa.org/Library/InforManagr/Guide.asp?FolderID=56> [인용 2006. 9. 7]

43) <www.neasc.org/neasc/aboutneasc.htm> [인용 2006. 9. 12]

44) <www.boisestate.edu/naas/> [2006. 9. 12 인용]

45) <sacscasi.org/region/standards/index.html> [인용 2006. 9. 7]

NCACS(알칸사, 애리조나 등 19주)는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등과 중등으로 규정이 나누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전문가는 주의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이한 것은 행정가, 카운슬러, 미디어 전문가를 비 교수전문직으로 구분하고 학생수에 따른 총인원을 따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⁴⁶⁾

〈표 15〉 NCACS 초등학교 미디어 전문가 배치규정

학생수	교내 전체 FTE*	각 범주 최저 FTE			
		교장	교감	카운셀러	미디어
0-250	1.0	.5			.2/이하**
251-599	2.0	1.0			.2/이하**
600-800	2.5	1.0			.5
800이상	3.0	1.0	.5		.5

* Full Time Equivalent

** 600명 이하의 초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1) 학교에 1명의 미디어 전문가가 학교미디어센터를 지도할 수 있다.
- 2) .2 FTE 자격자(1명)를 미디어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교사, 카운슬러, 교감 등).
- 3) 학교에 훈련받은 미디어 보조원-성인으로 유급 또는 무급-1.0 FTE을 둔다.

〈표 16〉 NCACS 중등학교도서관 미디어 전문가 배치규정

학생수	교내 전체 FTE*	각 범주 최저 FTE			
		교장	교감	카운셀러	미디어
0-250	1.5	.5		.5	.5
251-500	2.5	1.0		.5	.5
501-750	4.0	1.0	.5	.5	.5
751-1000	5.0	1.0	.5	.5	.5
1001-1500	6.0	1.0	1.0	1.0	1.0
1501-2000	8.0	1.0	1.0	1.0	1.0
2001-2500	10.0	1.0	1.0	1.0	1.0
2500이상	12.0	1.0	1.0	1.0	1.0

NCES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9-2000학년도에 공립학교로서 사서가 배치된 학교의 비율은 WASC 지역이 61%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NACS 79%, NEAC와 NCACS가 공동으로 86%, MSACS 92%, 가장 높은 SACS지역이 93%를 나타내고 있다.⁴⁷⁾ 이 분석내용을 보면 배치 규정의 유무나 규정의 정교함과 임용된 전문인력의 숫자 사이에는 그다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가장 열악한 WASC와 SACS 정도이다. 그 이유로는 주에 따라 거주

46) Commission on Accreditation and School Improvement, North Central Association, 2004. *School Accreditation: Standard and Criteria*. North Central Association.

47) *Fifty Years of Supporting Children's Learning: A History of Public School Libraries and Federal Legislation From 1953 to 2000*. 2005.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조건이나 학교환경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과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자격이 주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인가협의체의 규정이 지역 내의 개별 학교에 어느 정도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잘 알 수 없으나, 테네시 주의 경우에는 2002년에 SACS의 강력한 권고조치에 따라 배치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⁸⁾ 앨라배마 주 역시 배치 수준이 2위였는데 SACA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VII. 맺는말

미국은 50개 주와 District of Columbia 특별구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다. 하나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사회제도와 현상은 51 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자격제도, 교육제도 및 임용제도 역시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전문직의 명칭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학교도서관 전문직은 교육직과 사서직의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은 교사 자격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학교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은 주에 따라 각각 또는 동시에 요구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발전과정을 볼 때 1960년대 이전에는 교사자격에 대한 요구가 강하였다. 반면 60-70년대에는 도서관 및 교육 학습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매체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어 사서직과 시청각, 또는 교수매체 전문가가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으로 공존하게 되었다.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교육적 배경이 무엇이든 학교시스템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 영향력은 미국에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인가하는 전국 위원회인 NCATE, 그리고 분야별 수석교사를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NBPTS 등의 교육분야 전문단체가 사서직 전문단체인 ALA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학교도서관 전문가의 양성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주 교육청과 지역의 교육기관 인가단체에 의해 힘을 받고 있다는 점 역시 학교도서관 전문가의 기능과 신분이 학교시스템 내에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의 교육개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65% 해법은 학교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학교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학교현장에서 도서관 전문가의 신분이 교사와 교수지원 전문직의 어느 쪽으로 구분되는가, 교육계 및 사회가 학교도서관과 도서관 전문인력의 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48) Everhat, Nancy. 2002.

인정하는가,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정치, 또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따라 100여년의 미국 학교도서관 전문직은 도약의 기회 또는 전문직의 축소라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오와 주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아이오와 주에서는 오랫동안 존재하던 미디어 전문가의 배치규정이 1995년 주의 교육법에서 사라졌다. 임용규정이 사라진 약 10년 동안 195명의 미디어 전문가가 사라졌다. 그런데 주지사는 2006년 7월 1일, Student Achievement and Teacher Quality Program에서 새로운 배치규정을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전문직의 명칭을 미디어 전문가(media specialist)에서 사서교사(teacher-librarian)로 바꾸고 사서교사의 자격으로 교사자격증과 MLS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사서교사로의 명칭 변화는 단순한 어휘적 변화가 아니라 사서교사라는 명칭이 그 직책이 해야 할 일을 더 명확하게 기술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⁹⁾

학교도서관은 매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서관의 명칭과 전문직의 명칭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교육 배경을 가진 인력들이 활동하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존재이유가 교실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학교의 교육목표가 교과과정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라면 학교도서관 전문가는 문헌정보학의 전문지식과 함께 교과과정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학교도서관 전문직 자격에서 교사자격을 기본으로 하는 이유일 것이며 우리의 경우에서도 다를 바 없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49) Pinkowski, Jennifer. 2006. "Iowa: Teacher-Librarians a Must."
<www.schoollibraryjournal.com/article/CA6376085.html> [인용 2006. 8. 29]